

## 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, 기상현상증명서 서식에서 기상현상증명 신청인의 전화번호, 주소 등 개인정보 관련 항목을 삭제하는 등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 관련 서식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 <환경부 제공>

## ●고용노동부령 제286호

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0년 6월 19일

고용노동부장관 인

##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제5항 본문 중 “아니한다”를 “않는다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다른 법령에”를 “「영유아보육법」이나 다른 법령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휴원명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휴원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직장어린이집이 「영유아보육법」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 지원액은 제5항의 「영유아보육법」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비용 지원액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종전에는 직장어린이집이 「영유아보육법」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비용 지원액이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보다 적을 때 그 차액만을 지급하던 것을,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일정 기간 이상 휴원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「영유아보육법」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 지원액은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지원금과의 차액 계산 시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것임. <고용노동부 제공>

## ●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5호

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0년 6월 19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

##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출(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”를 “제출(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)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운영·관리하는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,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